

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규정의 근거법인 농지법 제25조, 동법시행령 제27조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
-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,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 제명 “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”를 “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- 위원회의 기능 조정(안 제4조)
 -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적합 여부 확인(신설)
 -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(삭제)
-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 -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은 행정규제개혁 일환으로 상위법인 농지법 제25조(임차료 상한) 및 제27조(임차료의 상한)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
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규정의 근거법인 농지법 제25조(임차료 상한) 삭제로
“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” 조례 제명을
“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”로 개정하고

-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신설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시 적합 여부 확인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의 육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전·이용하는데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며

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삭제한 조례안 제11조 임차료의 상환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